

1987.12.18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영보
편집인: 문화보관 김성
전화: 731-6111-3
인쇄: 서울특별시 문화발간소
전화: 735-3337

〈보통〉

시보

차 례

- [illegible]

《아름답게》

[illegible]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민과 교사의 교양을 높인다.

서울특별시

◎ 고 시

제 888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6
제 890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7
제 896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, 수도) 지적승인	7

◎ 구 고 시

성동구제 80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시행허가	8
서대문구제 35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실시계획인가변경및사업완료	8
구로구제 80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변경허가 (기간연장)	9
동작구제 89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공람	10

◎ 공 고

제 753 호 : 서울개포지구 (제 3 지구) 택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에따른 한지토지변경 (일부) 공람	10
제 757 호 : KS 표시정기치문해제	11
제 758 호 : 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	12
제 763 호 : 무기과열지구	12
제 770 호 : 도시공원시설관리위탁	12
제 771 호 : 신규임용후보자명부유효기간연장	13
제 773 호 :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(기간연거) 인가	14
제 774 호 : 무교구역제 3 지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위한공람	14
제 775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	16
제 777 호 : 무기과열지구지정	16

◎ 사 령

공 문 시 행

(관 인 생 학)

서울특별시

전치 01750-1152

(731-6381)

'87.12.15.

수신처:수신처참조

제목:물품관리전환소요조치

1. 건축지도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
소요를 조회하니 '87.12.26까지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람에 기간내 요청
이 없을서는 소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음.

가. 관리전환 대상 물품명세서

물품분류번호	품명	규격	수량	취득년월일	장부가액	상대
4140-001	전풍기	14"	6	미상	90,000	중소

서울특별시장

(건축지도과장전결)

수신처:서울특별시 상하전기과.

(관 인 생 략)

전 자 계 산 소

전산 22100-1019

(730-7498)

1987.12.15.

수 신 : 수신처참조

제 목 :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

1. 우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물품에 대한 관리전환 소요유무를 조회하오니 소요희망 부서에서는 '87.12.26 까지 관리전환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

2. 위 기일내에 요청이 없을시는 소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.

가. 소요조회 대상물품

물품분류번호	품 명	규 격	단 위	수량	정부가격	취득년도	상 태
7110-023	M. T 보관함 (서류보관함)	4 간	대	2	124,000	80 년도	중고품
7110-023	"	2×5칸	대	9	1,188,000	81 년도	"
7110-023	"	1×5칸	대	11	505,000	81 년도	"

끝.

전 자 계 산 소 장

수신처: 서파 1-68, 서구 1-17, 서소 12, 서사 1-59, 서보 1-17, 지하철공사.

시설관리공단, 강남병원, 농수산물관리공단

조 례

(공포문)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사회교육협의회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7.12.15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최열근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2229 호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회교육협의회의설치조례를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사회교육협의회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제3항중 "사회체육과장"을 "사회교육과장"으로 한다.
제7조 제2항중 "사회교육제장"을 "사회교육제도제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7.12.15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최열근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2230 호

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를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 제2항중 "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사회체육과장, 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재무과장"을, "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사회교육과장, 체육교육과장, 시설과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회의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7.12.15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최열근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2231 호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유재산심의회의설치조례를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공유재산심의

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제2항중 “사회체육과장”을
“사회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부 회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교 육 규 칙

(공포문)

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
선발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
공포한다.

1987.12.15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감 최일근

◎교육규칙제 317 호

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
선발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
선발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
정한다. 제7조 제2항중 “부위원장은
사회체육과장”을 “부위원장은 체육교
육과장”으로 하고, 동조 제3항중 “간
사는 사회체육과 체육담당장학관”을
“간사는 체육교육과 체육교육담당장학
관”으로 한다.

부 회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888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
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동 137-
1의 5필지 지상에 민영주택 건설사
업계획을 승인하고 별첨시행령 제32
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
고시한다.

1987.12.15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명: 민영(연립주택)주택건설
사업계획 승인
2. 사업주체: 건설주택건설(주) 정연국
(망우동 151-23)
3. 사업시행지위치 및 면적규모
가. 위치: 동대문구망우동 137-1의
5필지
나. 대지면적: 4,496.10㎡
다. 규모: 연립주택 3층 2동 60세대
4. 사업기간: '87.12~'88.12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90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5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7. 12. 15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명: 민영주택건설사업
2. 사업주체: 한국수출공단직장연합회
41개조합
조합장 윤두희외 487명
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
가. 위 치: 구로구구로동 642-9
나. 대지면적: 11,974㎡

○도시계획시설(학교, 수도)지적승인 조서

다. 건축면적: 30,798.771㎡

라. 규모: 아파트 15층 2동

488세대

마. 사업시행기간: 1987. 12

~ 1988. 11. 30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96 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, 수도)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562 호(87.8.8) 및 같은고시 제 131 호(87.2.27)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(학교, 수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면은 원안구체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관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7. 12. 15

서울특별시장
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 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학 교 (영락교교)	관악구봉천동 1558-1 일대	11,968.1	(증)1,480.7	13,468.3	추가결정

구 분	시 설 명 위 치	구 모 (㎡)			비 고
		기	장	면 적	
신 설 수 도	관악구 신림동 1513 일대			318.7	신림 2가압장
"	관악구 신림동 808-324 일대			498	난곡가압장

※ 도면 - 별첨 (생략)

구 고 시

◎ 성동구고시제 80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시행하기

1. 서울시고시 제 137 호 (85.3.5)로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 155 호 (85.3.5)로 지적승인된 성동구 금호동 4가 1345 의 1 같은동 1346번지간 및 1347 번지 앞 도시계획시설 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시행허가 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7. 12. 15

성 동 구 청 장

- 1) 사업시행자 : 성동구금호 4 가 1345 의

- 1 같은동 1346 번지간 및 1347 번지 앞
- 2)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

- 3) 사업의 규모 : 도로개설
(폭=4 m, 연장=60 m)

- 4)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허가일로부터 ~ 1988.7.31

- 5) 사업시행자

주소 : 성동구금호동 4 가 1339 번지

성명 : 금강제화(주) 대표 신 회 철

- 6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유자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생략

◎ 서대문구고시제 35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설치계획인가
변경및사업완료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74 호 (84.2.12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75 호 (86.2.3)로 인가된 서대문구 연화동 141-2 일대의 도시계획사업

- (학교)을 일부 변경하여 사업완
료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, 제
27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
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2. 변경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
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7. 12. 15

서 대 문 구 청 장

가. 사업시행지: 서대문구 연희동
141-2 일대

나.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사업(학교)
명칭: 연북중학교 신설

다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: 서울특별시
교육위원회 교육감

라. 사업의 시행면적: 14,871㎡

마. 건축면적: 당초 1,584㎡

변경 1,427.4㎡ (감 156.6㎡)

바. 연면적: 당초 6,291㎡

변경 5,397.75㎡ (감 893.25㎡)

사. 사업기간: '84.3~'86.12.31

아. 도 면: 별첨(생략)

라. 사업시행규모

구 분	당 초	변 경	비 고
사업시행면적	5,473㎡	변경 없음	
건축면적	1,114.10㎡	"	
건축연면적	4,347.70㎡	"	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 초: '86. 11. 11 ~ '87. 11. 10 연 결: '86. 11. 11 ~ '89. 12. 10		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전물의 소재지, 지번, 지적지목, 소유권이 의의 권리명세: 생략(해당없음)	

◎구로 구고시제 80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변경허가
(기간연장)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746 호('86.10.
14)로 지적승인 및 서울특별시고시
제 813 호('86.11.11)로 사업시행허
가, 구로구고시제 23 호('87.6.12)로
사업변경허가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
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
동법 시행령 제 6 조와 서울특별시
행정권한 위임조령 제 5 조에 의거
도시계획사업 시행변경허가 하였
기 고시한다.

1987. 12. 15

구 로 구 청 장

가. 사업시행지: 구로구고류동 199-1
외 4필지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
사업(학교) 서울고등기술학교

다. 사업시행자주소성명: 서울특별시
구로구 오류동 199-1

학교법인 정문학원 윤순성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, 성명: 생략(해당없음)

◎동작구공고제 89 호

도시계획사업(시장)시행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772 호('87.11.3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시장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한다.
2. 관련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 일간 보이오니 의견이 있을시는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란다.

1987. 12 15

동 작 구 청 장

가. 사업시행지: 동작구 사당동 136-1 의 3 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도시계획사업(시장)시행 - 사당소평원단

다. 사업규모

- 대지면적: 3,518㎡

- 건축계획: 건축면적: 1,587.25㎡

· 건축연면적: 21,365.41㎡

라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: 동작구

사당동 135-1 경유산업㈜ 오준경

마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착 수 일: 1987.12

- 준공예정일: 1988.12.31

바.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,

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: 생략-동작구 도시정비과

비치

사. 토지,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주소, 성명: 생략-동작구도시정비과 비치

아. 공람기간: 1987.12.10-1987.12.24(14일간)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53 호

서울개포지구(제3지구)택지개발

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

환지토지변경(일부)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제 76 호('82.2.18)로

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된

서울시공고제 533 호('83.9.24)

와 제 340 호('84.6.16)로 환지처

정된 개포지구 택지개발에 대하여

2. 전철부고시 제 224 호('85.5.17)

제 146 호('87.4.21) 등고시제 426호('87.9.31)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환지계획의 지구제 중첩, 타행정구역 환지, 행정구역정제와 불일치 민원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

3.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같은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불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.

4. 본계획에 대한 관계도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가. 사업명 : 개포택지개발사업

나. 시행면적 : 6,494,276 평(변경없음)

다. 변경구역 : 택지 및 공공시설 일부 (여객자동차 정류장, 도서관, 복지시설, 공원, 도로, 유통업무빌딩, 연수원, 공공의 청사, 주거용지)

라. 공람기간 : 1987.12.15~1987.12.29

마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

바. 관계도시 :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도시와 같음.

1987.12. 9

서울특별시청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57 호

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

서울특별시공고 제 543 호('87.9.7)로 KS 표시정지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제하고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.

1987.12.15

서울특별시청

업 제 명	부 산 하 정 밀	대 립 전 자 동 산 (부
대 로 자	류 동 수	오 성 국
소 재 지	강서구동촌동 639-23	구로구독산동 1000-9
규 격 번 호	KSB 7501	KSC 2508
규 격 명	소형 분류우트랜드	수거일 별납
종 류 등 급	80 mm 이하	RS 40B-1.6
해 제 일 자	'87.12. 7	과 동

19-12 제 1387 호

시

보

1987.12.15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58 호

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

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항 규정에 의
거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 면허를

실효처분 하였기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
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

1987.12.15

서울특별시장

면허번호	업 제 명	소 재 지	대 표 자	처 분 사 함	사 유
제 2 종 690 호	화선 콘트 롤즈	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4-1 B-11-131	김 인 형	면허실효	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항 (공사업폐지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63 호

투 기 과 열 지 구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3 조의 2
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
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동조제 2 항 규
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

1987.12.15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1. 지정구역: 서울특별시성동구광장
동 218-1 외 3 필지
2. 면 적: 73,903㎡
3. 아파트명: 광장동 극동아파트
4. 규 모: 아파트 14 층 16 개동
1,344 세대

5. 사업주체: 대한제지㈜

대표 양 승 학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70 호

도시공원시설(테니스장)관리위탁

1.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동 356 번지
장안명 근린공원내 시설되어 있는 테
니스장을 도시공원법 제 6 조 3 항에
의거 관리 위탁하고 이를 공고한다.
2. 관계도시는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
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7.12.15

서울특별시장

가. 위치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56 번지 나. 시설종류 및 명칭: 배니스장 다. 위탁관리자: 동대문구 상봉동 127-39 번지 김 용 환 라. 시설물내역: 배니스장:코트 1 면, 연습장 1면 954㎡ • 관리실: 관리사무실 및 샤워실 1동 38.88㎡ 청고 및 숙직실 1동 13.2㎡ 마. 관리기간: 1988.1.1 ~ 1988.12. 31 바. 편제도면 생략	◎서울특별시공고 제 771 호 신규임용후보자명부유효기간연장 지방공무원법 제 36 조 제 4 항 및 동 조 제 6 항 규정에 의하여 '85년 제 2 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'85.12.19 임용 후보등록을 권한 다음 위의 임용후보 자 명부유효기간을 '86.12.19 까지 1 년간 연장한다. 1987.12.15. 서울특별시장
---	---

- 다 음 -

○임용후보자명부 연직자명단

성 명	생년월일	성별	주 소
정준양	1960. 4. 18	남	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189 주공아파트 434 동 296 호
한일현	1961. 5. 3	•	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 3-51
박은섭	1960. 9. 1	•	서울특별시구로구개포동 231-5
류선균	1958. 3. 9	•	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모현리 225
신기현	1957.12.30	•	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가좌동 385-14
이명재	1957. 2. 9	•	경기도안양시안양동 97-3 진흥아파트 17 동 406 호
이상홍	1959. 2. 6	•	서울특별시은평구역촌동 2 구획 1 호의 201 호
박영철	1960.11.12	•	경상북도달성군구서면향동 2 동 583

◎서울특별시공고 제 773 호

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
(기간연가)연가

1. 건설부공고 제 6 호 및 제 8 호('68. 1월) 서울시공고 제 13 호로('82.3. 20) 사업시행인가 공고한 영동, 김 포 및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4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4 조의 규정

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(기간연가)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2. 관제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와 강동, 강남,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개별 통지는 하지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갈음한다.

1987. 12. 15시 장
서울특별시장

- 사업계획 변경내역 -

지구명	인가면적 (㎡)	시행자	사업시행기간		비고
			기	정	
영 동	1,851,398	서울특별시청	'71. 8. 24	'71. 8. 24	1년연장
			'81. 12. 31	'88. 12. 31	
김 포	4,706,334	"	'68. 1. 23	'68. 1. 23	"
			'87. 12. 31	'88. 12. 31	
가 락	7,452,003	"	'82. 3. 20	'82. 3. 20	"
			'87. 12. 31	'88. 12. 31	

◎서울특별시공고 제 774 호

무교구역 제 3 지구 재개발사업
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

1. 건설부고시 제 367 호('73.9.6)로 재개발구역지정 되고, 동고시 제 46 호('76.4.7) 및 제 329 호('81.8.27)로 차입

제직 결정되었으므로, 서울시고시 제 530 호('87.7.28)로 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무 교구역의 제 3 지구 사업시행자인 유진판 광(주) 대표 박유자와 2 인으로부터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30 일간 일반 인에게 보인다.

2. 동서행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 지하 자 에 참 조 한다. 1987. 12. 15 서울특별시	가. 공람개요
--	---------

구 분	기 정		비 고
	제 3 지 구	제 12 지 구	
1) 재개발사업의 명칭	무교구역제 3 지구재 개발사업	무교구역제 12지구 재개발사업	무교구역제 3 지구 재 개발사업
2) 시행구역	중구무교동 63-1 일 대 (21 필)	중구태평로 1 가 18 일대 (5 필)	무교동 63-1 일대 (33 필)
3) 시행면적	3,853.2 ㎡	4,065.6 ㎡	8,600.8 ㎡
4) 시행자	유진관광㈜ 광유지	유진관광㈜ 광유지 동산토건㈜ 고층진 두산개발㈜ 남궁현	유진관광㈜ 광유지 동산토건㈜ 고층진 두산개발㈜ 남궁현
5) 추진 사무소 소재지	중구무교동 63-1	강남구논현동 105-7 중구무교동 63-1	중구무교동 63-1
6) 시행기간	'84.7.23~'88.6.30	'84.4.30~'89.3.30	'84.4.30~ 91.12.30
7) 사업시행계획서	생 략	생 략	생 략
8) 규 약	"	"	"
9) 시행절제도서	"	"	"
10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축물 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 세: 생략	나. 공람기간: '87.12.15 ~ '88.1.29 다. 공람장소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	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75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공람

1.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적승인한 다 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 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 및 동시행령 제 27 조 2 규정에 의거 관제서류를 공람한다.
2. 토지(건물)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에서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

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3. 관세도서는 도봉구청 로복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 며 본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 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기 바람.

4. 공람기간 : 87.12.15-1987.12.29(14일간)

1987.12.15

서울특별시장

공 람 용 지

가. 사업개요

사업시행지	사업종류및 사업명칭	규 모	착공	준 공	결정고시일자	지적고시일자
철계동 869-8외6필지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영광역상진입 로확장공사	B=12m L=90m	87.11	88.2.28	서고358호 87.5.21	서고574호 87.8.12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77 호

투 기 과 열 지 구 지 정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3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동조 제 2 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

1987.12.15

서울특별시장

- 다 음 -

1. 지정구역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81 번지 (736 필지)
2. 면 적 : 70,033.4 ㎡
3. 아파트명 :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
4. 규 모 : 아파트 10-15 층 15 개동 1,208 세대
5. 사업주체 : 도화구역 제 3 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 김근해

사

령

◎ 1987 년 12 월 9 일

령 제 375 호

성 명	발령 부 서	발령호봉	발령 직 급	비 고
박 용 태	구 로 구	3 호 봉	지방토목지원보시보	신 규
김 중 권	성 동 구	4 "	"	
오 제 섭	강 동 구	3 "	"	
이 성 호	은 평 구	2 "	"	
이 화 복	도 봉 구	4 "	"	
최우요섭	강 동 구	4 "	"	
문 홍 미	강 남 구	3 "	"	
장 형 상	강 동 구	1 "	"	
송 종 법	강 동 구	4 "	"	
백 은 식	강 남 구	1 "	"	
윤 주 영	강 동 구	1 "	"	
최 규 만	성 북 구	3 "	지방전기지원보시보	
백 성 현	성 북 구	3 "	"	
김 학 수	성 동 구	4 "	"	
이 우 규	강 서 구	4 "	"	
김 함 석	은 평 구	4 "	"	
한 순 영	마 포 구	4 "	"	
조 성 우	선 유 수 원 지	5 "	"	
정 성 화	서 대 문 구	4 "	"	
이 병 우	강 동 구	6 "	"	
유 승 용	김 포 수 원 지	3 "	"	

◎ 1987 년 12 월 3 일

령 제 376 호

성 명	발령 사 항	원 부 서	직 급
조 전 배	지방행정주사보에 추서함.	구 로 구	지방행정서기

19-18 제 1387 호 시

1987. 12. 15

◎ 1987 년 12 월 8 일				명 제 377 호	
성 명	발 령 사	항	현 부 서	직 급	
박 중 판	복직을 명함.		중 구	지방행정서기	
백 대 승			강 서 구	지방행정서기보	
◎ 1987 년 12 월 15 일				명 제 378 호	
성 명	부 서	직 위 (호봉)	직 급	현 부 서	
직 상 훈	보건환경연구소	공해측정기사 (1 호봉)	지방별정직 8 급 상당		
				명 제 379 호	
성 명	부 서	직 위 (호봉)	직 급	현 부 서	
김 상 만	시 민 과	마이크로필름촬영 기사 (7 호봉)	지방별정직 7 급상당	신 규	
임 석 택	"	" (8 호봉)	"	"	
한 상 호	전자계산소	전산통신기사 (3 호봉)	"	"	
류 근 학	"	전산전기기사 (2 호봉)	지방별정직 8 급상당	"	
이 광 식	보건환경연구소	공해측정기사 (3 호봉)	"	"	
이 길 화	"	" (3 호봉)	"	"	
장 제 영	"	" (1 호봉)	"	"	
정 호 진	"	" (1 호봉)	"	"	
김 은 숙	시립대학교	자료조사원 (5 호봉)	지방별정직 9 급상당	"	

제 1387 호

사

보

1987.12.15 19-19

성명	부서	직위(호봉)	직급	현부서
윤창근	한강관리사업소	한강안전관리대원 (6호봉)	지방별정직 9급상당	신규
박숙향	전자계산소	천공원 (1호봉)	.	.
정옥자	.	천공원 (1호봉)	.	.

◎ 1987년 12월 15일

명 제 330 호

성명	발령부서	발령호봉	발령직급	비고
박수경	총무과	1호봉	지방사서서기시보	신규

명 제 351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조한빈	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	보건환경연구소	지방별정직 7급상당
김연철	.	.	지방별정직 8급상당
장영주	.	.	.
김용국	.	.	.

서울특별시